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별표 및 별지서식)

2017. 2



목 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3단 비교표, 별표 및 별지 서식)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1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5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3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3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	제1조(목적) 3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3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 3	
제3조(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 6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6	제3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6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7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7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7	
제6조(성실의무) 8		제2조(성실의무) 8
제6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 공 금지) 9		
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9	제6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9	
제7조의2(전통기술의 지원 등) 9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10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10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10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 격시험의 응시요건) 11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11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12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13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13		제4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1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14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14 제11조의2(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제5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14 제5조의2(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 15 제5조의3(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15
제12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15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6		
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16		제5조의4(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16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운영		
제1절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제1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18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18	제6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18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20 제8조(변경신고 등) 21 제9조(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 22 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22 제10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23 제10조의3(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26 제10조의4(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 27 제10조의5(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28
제14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23		
제14조의3(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28	제13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30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29	제14조(부대 문화재수리의 범위 등) 30	
제16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30		
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31		제11조(문화재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31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3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제18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내용) 34 제19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제한) 35 제20조(문화재수리업의 상속) 35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36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문화재수리) 36 제23조(준용) 37		제13조(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35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4조(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37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39 제25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39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40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41 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41 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42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44 제31조(검사 및 인도) 44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45	제15조(도급계약의 내용) 37 제16조(하도급의 통보) 39 제16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39 제17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45	제14조(도급 대장) 37 제15조(하도급의 통보) 39 제16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42 제1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45
제3절 문화재수리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45 제34조(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47 제35조(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48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49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45 제19조(하자담보책임 기간) 48 제19조의2(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사유) 4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제37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51	제19조의3(문화재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49	
제4절 감리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52	제20조(감리대상 등) 52	제17조의2(책임감리 적용기관) 52
	제21조(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53	제17조의3(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요건) .. 53
	제22조(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54	제18조(감리보고서) 54
	제22조의2(감리 보고서의 제출) 57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56
제39조(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57	제23조(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57	제20조(감리일지) 57
제40조(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58		
제41조(감리의 제한) 58	제24조(감리의 제한) 58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58	제24조의2(재단의 문화재수리 사업) 58	
제42조(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 60	제25조(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60	
	제26조(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60	
제43조(문화재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61		
제44조(「민법」의 준용) 62		
제5장 감독		
제45조(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62		
제46조(시정명령 등) 63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64		제21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6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제48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66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66	제26조의2(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66	제22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66 제22조의2(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공고) 66
제6장 보칙		
제50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69 제51조(수수료) 70 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73 제5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73 제54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75	제27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69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73 제29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75	제23조(수수료) 70 제24조(전문교육 수료증) 73 제25조(문화재수리의 평가) 75 제26조(실측설계의 평가) 76 제27조(우수 문화재수리업자의 지정) 77 제28조(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지정) 78 제29조(규제의 재검토) 79
제55조(청문) 79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79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79 제3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1 제30조의3(규제의 재검토) 82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83		
제7장 벌칙		
제58조(벌칙) 83 제59조(벌칙) 8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제60조(벌칙) 85		
제61조(양벌규정) 85		
제62조(과태료) 86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86	
부칙 88	부칙 88	
	시행령 별표 9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 -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문화재수리기술자"란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조경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소유자 및 같은 법 제34조(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3. "문화재수리기능자"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 "문화재수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재수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실측설계"란 문화재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제1호 각 목의 것을 실측(實測)하거나 고증(考證) 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7. "문화재실측설계업"이란 이 법에 따른 실측설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문화재실측설계업자"란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감리"란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일반감리: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업무 나. 책임감리: 일반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10. "문화재감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1. "문화재감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감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2. "문화재감리원"이란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감리업자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소속되어 문화재수리의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下都給),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게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발주자"란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5.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를 말한다. 16.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계약을 말한다. 17.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문화재수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 2.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확보 대책 3. 문화재수리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1.10.> ③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직접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⑤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및 동산문화재 분야, 문화재청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16.>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은 동산문화재 분야의 문화재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7.1.10.> 1. 문화재청 2. 국립중앙박물관 3. 국립현대미술관 4. 국립민속박물관 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0.> 1.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별표 1에 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⑥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른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2. 식물보호 분야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및 토양개량 분야 나.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분야 3. 동산문화재 분야 가. 박제 및 표본 제작 분야 나. 조각 분야 다. 표구 분야 라. 칠공(漆工) 분야 마. 도금 분야 바. 모사(模寫) 분야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제6조(성실의무)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제2조(성실의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2.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게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나 이해관계인은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2.3.]		
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자재의 가격·품질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수리등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 각 호의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전통기술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보급, 재료·기법의 연구, 자재수급, 교육 등이 필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요한 경우에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3.]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①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2.12.11.> ④ 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 및 장소 3. 시험 과목 4. 합격자 발표 일시, 방법 및 장소 5. 응시원서의 발급 기간·장소 및 접수 기간·장소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명하는 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하는 서류의 심사 기준일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2.5.] 제8조제5항 중 자격시험 응시요건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 설계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16.> 1. 문화재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4. 문화재수리기능자일 것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시험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람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 과목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해당 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응용력 2.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3.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4. 올바른 직업윤리관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①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②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2016.12.2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②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①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분야의 보유자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3.> ②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기시험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되, 실기시험 합격자는 실기시험 심사위원 1명당 100점을 만	제5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2.3.> ②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3.>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제목개정 2016.2.3.]	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공고·응시원서, 면접시험의 평가사항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3항,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11조의2(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마쳐야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수료증과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7.1.10.]	2.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제5조의2(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7.2.3.] 제5조의3(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2.3.]
제12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로서 경력·학력·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에 필요한 자료,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 2019.2.4.] 제13조의2		제5조의4(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경력·학력·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자격증 사본 3. 졸업증명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4. 사진 1장 5.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6. 문화재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②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6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6호의7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⑤ 제4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발급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경력등에 관한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6호의9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2.3.] [시행일:2019.2.4.] 제5조의4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운영		
제1절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제1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①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4.12.16.> 1. 별표 7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	제6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⑦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우에는 문화재수리업등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을 갖추는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가. 법 제4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지났을 것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을 것 5. 문화재실측설계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일 것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7.2.3.>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3.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5.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주된 영업소 소재지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1. 등록 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제8조(변경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6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수첩 나.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다.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 ②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업자 등"이라 한다)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移轉)되면 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9조(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제14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문화재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 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수리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문화재수리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전년도 실적등"이라 한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방법, 전년도 실적등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 2019.2.4.] 제14조의2		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2월 15일까지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매년 4월 15일, 개인은 매년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문화재수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자 2.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 법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③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나. 가목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문화재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리의 경우: 다음의 서류 전부 1) 문화재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다만,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3)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관 기관이 발급한 서류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재무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말한다. 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3.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보유현황표 4. 별표 1의2 제1호마목2)에 따른 신인도(信認度) 반영비율에 관한 증명 서류 [본조신설 2017.2.3.] [시행일:2019.2.4.] 제10조의2 제10조의3(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 평가는 별표 1의2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하여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양도 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은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의 양도가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문화재수리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문화재수리 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문화재수리 실적에 합산한다. ⑤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실적도 해당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2.3.] [시행일:2019.2.4.] 제10조의3 제10조의4(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 ①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업종 및 등록번호 4. 문화재수리 능력 평가결과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2.3.] [시행일:2019.2.4.] 제10조의4
제14조의3(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		제10조의5(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공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 2019.2.4.] 제14조의3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4. 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른 양도·합병의 신고 5.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상속의 신고 6.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명령 7. 법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자격 취소·정지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영업정지 9. 문화재수리업자등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처분 [본조신설 2017.2.3.] [시행일:2019.2.4.] 제10조의5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2016.12.2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건축사법」(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4. 제3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9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나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6.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한한다) 7.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8.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6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문화재수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두 종류 이상의 공종(工種)이 복합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문문화재수리업은 문화재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분	제13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제14조(부대 문화재수리의 범위 등)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개정 2017.1.10.> 1.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시행함으로 인하여 필요한 종된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문화재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	2.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가 복합된 문화재수리로서 전체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전체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문화재수리 3. 종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요건과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제11조(문화재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6호 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규정을 준용한다.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5.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문화재수리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③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1. 양도하려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2. 양도 예정 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를 받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 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양수인이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7조제3항,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의 영위기간 및 문화재수리 공사금액 실적을 합산할 수 있다. 1. 개인이 영위하던 문화재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2. 문화재수리업과 문화재수리업이 아닌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다른 회사 또는 분할합병한 다른 회사에 그 회사가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⑦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양도에 따른 영위기간 등의 합산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 제2호 및 제23조에 따라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 법인합병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내용) ①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행 중인 문화재수리의 도급에 관한 권리·의무 2. 문화재수리가 끝났으나 그에 관한 하자담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② 제1항의 경우 시행 중인 문화재수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제한)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49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不正當業者)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20조(문화재수리업의 상속) ① 문화재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상속인은 문화재수리업을 상속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사		제13조(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시·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이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문화재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4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문화재수리) ①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를 완성할 때까지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④ 문화재수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4조(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도급 금액, 수리기간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히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도급계약의 내용)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문화재수리등의 구체적 내용 2. 문화재수리등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 3.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4. 문화재수리등의 중지 또는 계약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4조(도급 대장)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문화재수리 도급대장을,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측설계 도급 대장을, 문화재감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③ 수급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내용이 적힌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도급금액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그 밖에 해당 문화재수리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8. 해당 문화재수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9. 도급 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0. 문화재수리등의 완성 후의 도급금액 지급 시기 11. 계약이행 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2.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하자담보 방법 1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문화재수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문화재수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그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이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④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제16조(하도급의 통보)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재감리업자가 감리를 하는 문화재수리로서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문화재감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린 것으로 본다.	제15조(하도급의 통보)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하도급 통보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규모·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3. 예정공정표
제25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제16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문화재수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 2019.2.4.] 제25조의2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 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면 제16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의 심사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0.] [시행일 : 2019.2.4.] 제16조의2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법 및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한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 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既成金)을 받았을 때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 변경 또는 물가 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문화재수리 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서 지급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를 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문화재수리 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문화재수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제16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문화재수리의 하도급 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문화재수리 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여 직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문화재수리의 대금을 청구할 때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의 하도급 대금을 분명하게 밝혀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 대금의 수령인을 그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3.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성(既成) 부분과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에 따른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라.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한 문화재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리의 완료 시점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에게 그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①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을 체결한 발주자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검사 및 인도)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문화재수리의 완료 또는 기성(既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부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 문화재수리가 계약대로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를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를 하거나 설계도서대로 문화재수리를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3절 문화재수리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문화재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무의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의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화재수리	제1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수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그 문화재수리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재수리 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경력 또는 인원수를 강화된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16., 2017.1.10.>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할 때에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④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그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재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② 문화재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5조(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자가 그 재료 또는 지시가 적당하지 아니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문화재수리 재료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한 경우 3. 발주자가 문화재수리의 목적물을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업자와 발주자	제19조(하자담보책임 기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별표 9와 같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사이에 체결한 도급 계약서에 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다만, 그 특약에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필요 시 문화재 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에는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제19조의2(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사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설계 변경을 한 경우 2. 문화재수리업자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실측설계도면 또는 준공도면 작성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실시한 연구 또는 조사 결과를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1.10.] 제19조의3(문화재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① 법 제36조제4항에서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2.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문화재의 연혁, 구조, 양식, 보존상태 및 주변 상황 등 수리대상의 현황 2. 문화재수리의 내용 3.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5. 실측설계도면 및 준공도면 6. 그 밖에 문화재수리의 기록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에는 해당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0.]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자는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필요 시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에는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2.3.> ⑤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 : 2019.2.4.] 제36조제5항		
제37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①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에는 문화재수리업자등,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가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고증, 양식,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4절 감리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2.3.> ③ 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제20조(감리대상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6., 2017.1.10.>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만,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문화재청장이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	제17조의2(책임감리 적용기관)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제3호 이외의 출연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본조신설 2017.2.3.] [시행일:2019.2.4.] 제17조의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④ 문화재감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⑤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⑥ 제5항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⑦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 2019.2.4.] 제38조의 개정규정 중 책임감리에 관한 부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재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만,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발주자가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 ③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 중 문화재청장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신설 2017.1.10.> [시행일 : 2019.2.4.] 제20조(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1조(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일반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주문화재감리원과 비상주문화재감리원으로 구분하며, 그 업무범위는 별표	제17조의3(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요건) 영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영 제20조제2항제1호의 경우 가.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영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 가.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영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10과 같다. <개정 2014.12.16., 2017.1.10.> 1. 상주문화재감리원 한 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 2. 비상주문화재감리원 수시로 또는 필요한 때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비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 이 경우 1명의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은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17.1.10.>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감리업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일 : 2019.2.4.] 제21조(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2조(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① 문화재감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일반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1. 별표 11의 배치기준에 따라 상주문화재감리원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1)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1)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본조신설 2017.2.3.] [시행일:2019.2.4.] 제17조의3 제18조(감리보고서)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재수리를 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또는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할 것 2.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만, 문화재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종류에 해당하는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상주문화재감리원이 감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상주문화재감리원을 다른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② 문화재감리업자는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1.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문화재감리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1명 이상 계속하여 배치할 것. 다만, 문화재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종류에 해당하는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문화재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배치하는 문화재감리원 외에 각 종류별 문화재감리원을 해당 종류의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각각 1명 이상 계속하여 추가로 배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치하는 문화재감리	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일반감리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1. 문화재수리 및 감리의 개요 1의2. 문화재감리원의 감리일지 2.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3. 주요 공정별 문화재수리 현황(문화재수리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명단을 포함한다) 4. 품질시험 및 검사 현황 5. 검측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6.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7. 문화재수리 설계 변경 현황 8.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 9. 문화재수리 전후 사진 10.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1. 문화재수리 및 감리 용역 개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원이 감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문화재 감리원을 다른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③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문화재감리원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문화재감리업자가 스스로 문화재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1.10.> ⑤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일 : 2019.2.4.] 제22조(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2.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3. 문화재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4. 검측 실적의 종합 5.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6. 주요 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7.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 8.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 9.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10. 종합분석 11.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일:2019.2.4.] 제18조(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감리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제22조의2(감리 보고서의 제출)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가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최종 감리보고서에는 해당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0.] [시행일 : 2019.2.4.] 제22조의2(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이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3.> [시행일:2019.2.4.] 제19조(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감리일지)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의 설계도서·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재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문화재수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문화재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그 밖에 문화재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제40조(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요구받은 문화재감리원이나 문화재감리원의 변경을 요구받은 문화재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1조(감리의 제한)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문화재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16.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4.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	제24조(감리의 제한) 법 제4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개정 2016.2.3.>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24조의2(재단의 문화재수리 사업) 법 제41조의2 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전통건축의 부재(部材)와 재료 등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 2.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 3.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연구 및 전승 활성화 4. 문화재수리(문화재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6. 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보존 지원 7.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 2019.2.4.] 제41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책임감리에 관한 부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를 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1.1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제42조(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 ① 문화재수리업자들은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등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제사업 등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문화재수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수리협회는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문화재수리협회의 회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지회나 분회를 둘 수 있다. ⑤ 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공제사업, 문화재수리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이하 "문화재수리협회"라 한다) 정관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분회(分會)·지회(支會)·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이나 문화재수리협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6조(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보증·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손해배상보증·선급금지급보증·하자보수보증 2. 회원에 대한 자금의 용자를 위한 공제사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② 문화재수리협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문화재수리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문화재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수리협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제44조(「민법」의 준용) ①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문화재수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2.3.]		
제5장 감독		
제45조(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문화재수리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등의 발주자·문화재감리원 등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자에게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제46조(시정명령 등) ①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8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5.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6.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나 문화재감리원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3.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4.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4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6.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제21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7.2.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8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8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정지할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기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명 2. 자격종목 및 자격번호 3.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시행일 : 2019.2.4.] 제47조제1항제8호의2, 제47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 중 책임감리에 관한 부분		
제48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6.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2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26조의2(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1. 별표 7에 따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제22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의2(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공고)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업종 및 등록번호 4.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7.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본조신설 2014.11.11.]	[본조신설 2017.2.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8.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8의2.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문화재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9.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10.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11.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4. 제3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5.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16. 제39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17.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18.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일부터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 2019.2.4.] 제49조제1항제14호·제15호의 개정규정 중 책임감리에 관한 부분		
제6장 보칙		
제50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 금액 중 그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	제27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노임(勞賃)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다)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리를 포함한다)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문화재수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노임을 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2.3.>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4. 제12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6. 제1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제5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16.2.3.>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3.> 1. 법 제51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 2. 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인지 3. 법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만 해당한다) 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나. 가목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만 해당한다) 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나. 가목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법 제5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수수료의 금액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4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일:2019.2.4.] 제23조제2항제1호(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제7호 및 제8호만 해당한다)
제5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2.3.>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4. 제12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6. 제1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7.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8.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5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 : 2019.2.4.] 제51조제1항제4호의2, 제51조제1항제7호, 제51조제1항제8호		
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무상 알게 된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감독 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2. 제56조제2항에 따라 위탁 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		
제5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 교육)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 교육) ①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감리원은 법 제53조제	제24조(전문교육 수료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은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범위와 전문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전문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제목개정 2016.2.3.]	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0.>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0.> 1.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2.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0.> 1. 문화재수리기술자 가.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가목의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2. 문화재감리원 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전문교육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2., 2017.2.3.> [제목개정 2017.2.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나. 문화재감리원이 가목의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시간은 각각 32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0.>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수료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전문교육의 수료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⑥ 문화재청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문화재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제목개정 2017.1.10.]	
제54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제29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법 제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문화재수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의 수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제25조(문화재수리의 평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가 90퍼센트 이상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문화재수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②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가 지정기간 동안 제49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재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실측설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의 실측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실측설계 ②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발주자 2.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3. 지정일 및 유효기간	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4의 문화재수리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문화재수리 평가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문화재수리 평가총괄표에 기록·관리한다. ④ 문화재수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이면 문화재수리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담이행방식이면 문화재수리업자가 분담하는 문화재수리별로 평가한다. <개정 2017.2.3.>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실측설계의 평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측설계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5의 실측설계 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총괄표에 기록·관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우수 문화재수리업자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별표 4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하면 별지 제30호 서식의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에 지정 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별표 5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측설계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별지 제31호서식의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에 지정 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청문)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2.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3.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0.]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0., 2017.1.10.>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제공,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제36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공개 [시행일 : 2019.2.4.] 제56조제2항제3호, 제56조제2항제4호, 제56조제2항제5호, 제56조제2항제6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1.10.> -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0., 2017.1.10.>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1.10.> -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재수리협회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7.1.10.> - 법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공시 및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3. 법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제공 및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공개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공시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 [시행일 : 2019.2.4.] 제30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0조제5항 제3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재청장(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문화재수리협회,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1.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공시 및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제공 및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상속의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일 : 2019.2.4.] 제30조의2제3호, 제30조의2제5호, 제30조의2제6호 제30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제한: 2015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2015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감리대상 등: 2015년 1월 1일 5. 제21조 및 별표 10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12.16.]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이나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2.3.>		
제7장 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자 2. 제47조(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자 또는 영업을 한 자 3. 제10조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 제5조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나 실측설계를 하게 한 자 2. 삭제 <2015.3.27.> 3. 제10조제4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4.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 또는 시행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록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5.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지 아니한 발주자 7. 제41조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시행일 : 2019.2.4.]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 중 책임감리에 관한 부분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자 -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자 -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자 -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보고·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자 8.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시행일 : 2019.2.4.] 제62조제1항제2호의2, 제62조제1항제2호의3		
부칙 <제9999호, 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4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1항제14호·제15호, 제53조 및 제59조제6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5항 중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에 따른 감리는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본다. 제4조(문화재수리업자들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2638호, 201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8조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6 제19호 및 제20호는 201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부칙 제4조에 따라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으로 보는 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2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12년 2월 5일에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최초의 보수	부칙 <제77호, 20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4조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호, 2012.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자 중 실측·설계업자 또는 실측·감리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로 본다. 제5조(문화재수리등 시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문화재수리등을 시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교육은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5일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37조제3항제5호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37조제3항제6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	<제120호, 2012.7.1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6쪽 중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90호, 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 201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530호, 2012.12.11.> (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단서 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⑮부터 ㉗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759호, 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1 제2호차목, 별표 2 제2호차목1) 또는 2)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있어서 각각 별표 1 제2호차목, 별표 2 제2호차목2) 또는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종전의 별표 2 제2호사목 또는 자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6호, 2016.2.29.>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부칙 〈제12693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문화재수리업자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248호, 2015.3.2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50호, 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3943호, 2012.7.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4676호, 2013.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711호, 2014.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 2017.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4·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제17조의2·제17조의3, 제18조·제19조(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제7호 및 제8호만 해당한다), 별표 1의2, 별표 1의3 제2호카목·하목2), 별표 2 제2호너목·더목(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3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에 관한 특례) 문화재수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전년도 실적 등 신고서의 제출기한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3월 15일까지로 한다. 제3조(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에 관한 특례) 문화재청장이 공시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기한은 제1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8월 31일까지로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제13965호, 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5조의2, 제36조제5항, 제47조제1항제8호의2, 제51조제1항제4호의2·제7호·제8호, 제56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2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의 개정규정, 제38조·제41조의2제1항제5호·제47조제1항제11호·제49조제1항제14호·제15호·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문화재청장은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설립위원회가 해산되었을 경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54호, 2014.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1호·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2호,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고 시설물의 층수가 3층 미만으로서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문화재수리의 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20조, 제21조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책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7115호, 2016.4.2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⑤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619호, 2016.11.29.> (예비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부칙 〈제14437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2호 및 제1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7774호, 2017.1.10.〉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2조의2(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의2제3호·제5호·제6호, 별표 10의2 및 별표 12 가목·라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표

경미한 문화재수리(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범위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	가.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나.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다. 누수 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라.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와고르기 하는 행위 마.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바.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사. 잔디를 보식(補植)하거나 깎는 행위 아.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지(蓮池)를 준설하는 행위 자. 보호책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차.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차.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카. 성곽이나 건물지 등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타.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파.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하. 기존 너와·굴피지붕의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 거.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 포방전 또는 전돌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너.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또는 거름주기 더. 자생 초화류를 심는 행위 러.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며.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또는 조경	가. 제1호의 경미한 문화재수리에 해당하는 행위 나. 기존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로서 수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 기존 시설물의 내부를 정비하는 행위 라.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별표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제8조제1항 관련)

종 류	업무 범위
1. 보수기술자	가. 건축·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遺構)조사 및 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2. 단청기술자	가. 단청분야[불화(佛畵)를 포함한다]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3. 실측설계기술자	가.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4. 조경기술자	가. 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5. 보존과학기술자	가. 보존처리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6. 식물보호기술자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 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별표 3] 삭제 <2014. 12. 16.>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 (제9조제2항 관련)

종류	공통과목 (2과목)	전공과목 (3과목)	
	선택형	선택형	논술형
1. 보수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시공
2. 단청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색채론, 도학(圖學)
3. 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
4. 조경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조경사	전통조경, 조경설계 및 시공
5. 보존과학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화학	보존과학개론, 문화재수복기술개론
6. 식물보호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토양학	수목생리, 수목병충해

비고

"문화재관련법령"이란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 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

[별표 5]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일부
면제과목(제9조제3항 관련)

종류	공통과목에서 면제되는 과목	전공과목에서 면제되는 과목
1. 보수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건축구조
2. 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건축실측
3. 조경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전통조경
4. 보존과학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보존과학개론
5. 식물보호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수목생리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1조제2항 관련)

종류		업무 범위
1. 한식목공	대목수	목조 건조물의 해체·조립 및 치목(治木)과 그에 따른 업무
	소목수	목조 건조물의 창호·단집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제작·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2. 한식석공	가공석공	석재의 가공과 그에 따른 업무
	쌓기석공	석조물의 축조·해체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3. 화공		단청(불화를 포함한다)과 그에 따른 업무
4. 드잡이공		드잡이(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 등을 이용하여 바로잡는 일을 말한다)와 그에 따른 업무
5. 번와(翻瓦)와공		기와의 해체 및 번와와 그에 따른 업무
6. 제작와공		기와·전(塼) 등의 제작과 그에 따른 업무
7. 한식미장공		미장과 그에 따른 업무
8. 철물공		철물 등의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9. 조각공	목조각공	목재를 이용한 조각, 목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석조각공	석재를 이용한 조각, 석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0. 칠공		옷 등의 전통 재료를 이용한 칠, 칠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1. 도금공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2. 표구공		표구, 표구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3. 조경공		조경의 시공과 그에 따른 업무
14. 세척공		세척과 그에 따른 업무
15. 보존과학공	훈증공	재료나 자재의 살균·살충·방부 등을 위한 훈증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처리공	보존처리와 그에 따른 업무
16. 식물보호공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과 그에 따른 업무
17. 실측설계사보		실측 및 설계도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8. 박제 및 표본제작공		박제·표본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9. 모사공		서화류의 모사와 그에 따른 업무
20. 온돌공		온돌의 해체·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별표 7] <개정 2017. 1. 10.>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1. 종합문화재수리업

종합문화재 수리업의 종 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 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수단청업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 청기술자 1명을 포 함한 2명 이상	한식목공(대목수) 1명 과 한식미장공, 번와와 공, 화공, 드잡이공, 한식 석공, 한식목공 중 서로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 을 포함한 3명 이상	개인	2억원 이상	

2. 전문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 수리업의 종류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 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 공, 세척공, 표구공 중 1 명을 포함한 2명 이 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식물보호업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단청공사업	단청기술자 1명 이상	화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목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대목수 1명과 한식목 공 중 1명을 포함한 2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명 이상			
석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쌓기석공 1명과 한식석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변와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변와와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3. 문화재실측설계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 실측설계업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법인	—	사무실
			개인	—	

4. 문화재감리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감리업	보수기술자 또는 실 측설계기술자 중 1 명과 실측설계기술 자, 보수기술자, 단 청기술자, 조경기술 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문화재수리업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사망,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이민, 학교·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해야 한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신고, 허가 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 또는 신고

등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의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실측설계기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을 등록한 실측설계기술자가 문화재감
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4호 문화재감리업 등록의 기술능력 산정 시 그
실측설계기술자를 포함할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가.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개인
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문화재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
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8]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

구 분	종류(업종)	업무 범위
종합 문화재 수리업	보수단청업	가. 건축·토목공사 및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遺構)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전문 문화재 수리업	조경업	가. 조경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과학업	가. 보존처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식물보호업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단청공사업	가.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목공사업	가. 목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석공사업	가. 석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변와공사업	가. 변와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비고

위 표의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 중 가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1. 목공사업, 석공사업 및 변와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2. 단청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별표 9]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19조 관련)

종류	세부 공종	책임 기간
1. 성곽	가. 석성(石城) 1)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2)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나. 토성(土城), 혼축성(混築城) 다. 전축성(塼築城) 라. 목책성(木柵城)	5년 3년 2년 3년 1년
2. 탑·석조물	가. 석불(石佛), 부도(浮屠), 비석(碑石), 석등(石燈), 당간지주(幢竿支柱), 지석묘(支石墓), 석빙고(石氷庫), 석탑(石塔), 석교(石橋) 등 나. 전탑(塼塔) 다.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石材部)	5년 3년 5년
3. 목조건축물	가. 지붕 1) 산자(欂栌) 또는 개판(蓋板) 이상의 기와지붕 2)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3) 역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4)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나. 목부재(木部材) 1) 기둥, 창방(昌枋), 대들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 2) 그 밖의 구조재 다.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라. 기초 및 기단 1) 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2)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 3) 도드락다듬 이상의 석조(石造) 기단·월대(月臺) 4)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마. 미장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바. 건축물의 단청(벽화, 불화 포함)	3년 2년 1년 1년 3년 2년 1년 10년 7년 5년 3년 1년 2년
4. 담	가. 사괴석(四塊石) 담장 나. 돌담, 자연석담, 판축(版築)담, 토(土)담, 전축(塼築)담, 외편(瓦片)담	3년 2년

5. 분묘	가. 봉분 시설(잔디심기는 제외한다)	2년
	나. 구조부	
	1) 적석총(積石塚), 석곽묘(石槨墓)	5년
	2) 전축분(塼築墳)	3년
	3) 목곽묘(木槨墓)	1년
	다. 병풍석(屏風石)	3년
6. 도로	가. 암거(暗渠), 배수로, 측구(側溝), 맨홀	2년
	나. 포장	
	1) 박석(薄石), 포방전(鋪方塼)	2년
	2) 마사토(磨砂土), 강회다짐, 혼합토 등	1년
7. 철물	가.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2년
	나. 구조철물, 보강철물	3년
8. 조경·식물 보호·발굴지 정비·벽화 등	가. 조경 시설물 및 조경 식재	2년
	나. 식물 보호	3년
	다. 발굴지 정비	2년
	라. 불상개금(佛像改金), 도금(鍍金), 탕화, 옷칠 등	5년
9. 문화재보호 ·보강시설	전통한옥양식 건축물 또는 보호각,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5년

<적용방법>

- 위 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기초부터 다시 복원하거나 신설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위 책임 기간의 3분의 2로 한다.
가. 기존의 유구(遺構)나 건축물의 가구 등에 덧붙이거나 보충하여 복원·보수하는 경우
나. 기존 구조나 부재를 해체한 후 해체한 부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사용하여 복원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 위 표에 없는 문화재수리 공종(工種)은 위 표의 유사공종에 따르며, 현대식 재료·공법으로 시공한 구조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서 공종별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기간이 긴 기간으로 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별표 10] <개정 2017. 1. 10.>

일반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1항 관련)

구분	업무범위
1. 상주문화재 감리원	가. 문화재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와 시공 가능성에 관한 사전 검토 라.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문화재수리를 위한 문화재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확인 바.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사.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아.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자. 문화재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차.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카. 준공 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타.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업무수행 내용 확인 파. 그 밖에 문화재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비상주문화 재감리원	가. 문화재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다. 문화재수리를 위한 문화재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확인 라.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마.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바. 문화재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사. 준공 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아.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업무수행 내용 확인 자. 그 밖에 문화재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 10의2] <신설 2017. 1. 10.>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2항 관련)

1. 문화재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확인
3.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와 시공 가능성에 관한 사전 검토
4.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6.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문화재수리를 위한 문화재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확인
8.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문화재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문화재수리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의 검토·확인
12. 준공 도면의 검토 및 문화재수리 준공검사
13.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업무수행 내용 확인
14. 문화재수리보고서의 검토·확인
15.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

[별표 11] <개정 2017. 1. 10.>

일반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제22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배치기준
1. 상주문화재 감리원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40억원 이 상인 문화재수리 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수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주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
2. 비상주문화 재감리원	제1호에 따른 상주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문화 재수리

[별표 12] <개정 2017. 1. 10.> [시행일:2019.2.4] 가목, 라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2	100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호	50
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	50
라. 법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3	100
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	50
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	100
사.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5호	100
아.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6호	50
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7호	100
차.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8호	50
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9호	50
타.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0호	5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표

[별표 1] <신설 2017. 2. 3.>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제5조의2 관련)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 류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가. 한식목공	대목수	대목장
	소목수	소목장
나. 화공		단청장, 불화장
다. 번와와공		번와장
라. 제작와공		제와장
마. 철물공		두석장
바. 조각공	목조각공	목조각장
사. 칠공		칠장
아. 표구공		배첩장
자. 그 밖의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2.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 류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가. 한식목공	대목수	대목장(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대목장(경기도 무형문화재)
		대목장(강원도 무형문화재)
		대목장(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서천대목장(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대목장(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대목장(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나. 철물공		두석장(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다. 그 밖의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제10조의3제1항 관련)

1.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천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text{문화재수리능력평가액} = \text{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 \text{자본금평가액} +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경력평가액} \pm \text{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계산식 중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text{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 \text{연평균문화재수리실적액}$$

- 1) 문화재수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하도급 금액을 포함한다.
- 2) 문화재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문화재수리실적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문화재수리실적액으로 한다.
- 3) 문화재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문화재수리실적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문화재수리실적액으로 한다.
- 4) 문화재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문화재수리실적액을 연평균문화재수리실적액으로 한다.

나. 위의 계산식 중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text{자본금평가액} = (\text{실질자본금} \times \text{실질자본금의 평점}) \times 70/100$$

- 1) 자본금평가액은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실질자본금은 해당 문화재수리업자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을 하기 위하여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에 따른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일 경우 자본금평가액은 마이너스가 되도록 평가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문화재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최근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기재된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하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은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로 본다.
- 3)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실질 자본금 규모	등록기준 자본 금의 2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 금의 2배 이상 3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 금의 3배 이상 4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 금의 4배 이상 5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 금의 5배 이상
평점	1.2	1.5	1.8	2.1	2.4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전년도 문화재수리업계의 기술인력 1인당 평균생산액} \times \text{보유 기술인력수} \times 30/100$$

- 1) 기술능력평가액은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전년도 문화재수리업계의 기술인력(문화재수리기술자등) 1인당 평균생산액은 문화재수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문화재수리업계에 종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내 총기성액과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총수는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문화재수리업계의 기술인력 1인당 평균생산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문화재수리업계의 기술인력 1인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한다)
- 3)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문화재수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을 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라. 위의 산식 중 경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경력평가액} = \text{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times \text{문화재수리업영위기간 평점} \times 10/100$$

- 1) 문화재수리업영위기간은 해당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일로부터 산정일까지로 한다.
- 2) 문화재수리업영위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문화재수리업 기간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2년 미만
평점	1.0	1.1	1.2	1.3	1.4	1.5
문화재수리업 기간	12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18년 미만	18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평점	1.6	1.7	1.8	1.9	2.0	

마.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신인도평가액} = \text{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times \text{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 1) 신인도 반영비율의 합계는 $\pm 10/100$ 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相計)한다.
- 2) 신인도 반영비율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구분	신인도 반영비율
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5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단, 이수자가 6명이 이상인 경우 6명으로 함)	+0.5/100× 이수자 수
나) 최근 1년간 법 제54조에 따라 우수업자로 지정된 경우	+4/100
다)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이 건설업기준 재해율 이하인 경우	
1) 40% 이하인 경우	+3/100
2) 40% 초과 70% 이하인 경우	+2/100
3) 7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1/100
라) 최근 1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100
마) 최근 1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6개월 초과	-5/100
(2)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3/100
(3) 3개월 이하	-2/100
바) 최근 1년간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100
사) 최근 1년간 법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100

2. 둘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능력을 평가할 때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본금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문화재수리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4.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다음 다음 연도의 문화재수리능력 평가 시 문화재수리실적 평가액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별표 1의3] <개정 2017. 2. 3.> [시행일:2019.2.4.] 제2호카목·하목2) 중 책임감리에 관한 부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		
라.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3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5개월	자격정지 2년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마.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4)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바.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4호의2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영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제외한다.				
아.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능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7호	자격취소		
차.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카.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호의2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연속적으로 5일 이상 이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파.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하. 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1호			
1)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란 다음과 같다.

- (1) 목조건조물: 기초부·기둥·보·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 (2) 석조건축물
 - (가) 성벽·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지대석(地臺石)·면석(面石)·여장(女牆) 및 성문·암문(暗門)·수문
 - (나) 석탑·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기단·탑신 및 상륜부
 - (다) 고분·능·분묘·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위 (2)의 (가) 및 (나)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 (4) 불상·벽화·괘불·공예품·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
- (5) 그 밖에 지정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재 내의 부재(部材)·부위(部位)·조경물

[별표 2] <개정 2017. 2. 3.> [시행일:2019.2.4.] 제2호너목·더목 중 책임감리에 관한 부분

문화재수리업자들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라.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년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다.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문화재 실측설계업자가 법 제15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문화재수리업자들이 법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	법 제49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마.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자본금 또는 시설이 등록 요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사. 법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합병 또는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아. 법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자.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영업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차.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문화재수	법 제49조제1항제8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카.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0호			
1)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영 제16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6)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	법 제49조제1항제11호			

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18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3) 영 제18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6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4) 영 제18조제4항 및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하. 법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너. 법 제3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더.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1)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법 제49조제1항제12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법 제49조제1항제1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법 제49조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법 제49조제1항제1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3)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6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머.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다만, 법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제1항제1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란 다음과 같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기둥·보·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축물

(가) 성벽·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지대석(地臺石)·면석(面石)·여장(女牆) 및 성문·암문(暗門)·수문

(나) 석탑·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기단·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능·분묘·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위 (2)의 (가) 및 (나)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4) 불상·벽화·패불·공예품·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

(5) 그 밖에 지정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재 내의 부재(部材)·부위(部位)·조경물

[별표 3] <개정 2017. 2. 3.> [시행일:2019.2.4.] 제6호, 제7호, 제8호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수수료
1. 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2만원
나. 문화재수리기능자	2만원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	5천원
3.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	5천원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가. 종합문화재수리업	5만원
나. 전문문화재수리업	3만원
다. 문화재실측설계업	3만원
라. 문화재감리업	3만원
5.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5천원
6. 법 제13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등의 발급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8. 법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 제공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별표 4]

문화재수리 평가기준(제25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1. 현황조사	○ 문화재수리 전 사전조사 및 문화재 특성조사 - 사전 설계도서 검토 여부 - 문화재 현황, 전통기법 및 양식, 전통재료 등 - 문화재수리로 영향을 받는 주변 환경 조사 등	10
2. 시공관리	○ 문화재수리 계획의 수립·실시 ○ 문화재수리 상태 -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 - 주요 공종의 시공 및 마감 상태의 적정 여부 - 해체·조립의 적정성 여부 -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활용	30
3. 품질관리	○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품질관리 상태 - 각종 시험의 실시 여부 - 적정한 자재 사용 여부 및 관리상태 - 잔여 부재의 재사용 여부 - 전통도구의 사용 및 전통기법 이행 여부	15
4. 공정관리	○ 공정관리 - 공정표의 작성 및 관리 여부 - 문화재수리 기간 중 전체 계획 대비 실적 - 문화재수리 현장의 주변 여건 등 공정의 난이도	15
5. 안전 및 환경관리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안전관리 교육 실시, 위험·안전 표지판의 설치 -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관리 실태 - 주변 환경의 훼손 여부	10
6. 현장관리	○ 현장관리 - 발주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지시사항 이행 실태 - 현장관리를 위한 인원 배치의 적정성 여부 - 자재 및 현장의 정리·정돈 상태 - 현장관리의 소홀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	10
7.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 현황 및 원형조사, 부재조사 등 조사기록의 충실 여부 - 세부 공사 내용 등의 기록 충실 여부 - 각종 자료정리 상태	10

2.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이전에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문화재수리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 비고

1. 문화재수리의 평가 시 평가등급은 우수(점수로는 배점×1), 양호(점수로는 배점×0.9), 보통(점수로는 배점×0.8), 불량(점수로는 배점×0.6)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발주자는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위 세부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17. 2. 3.>

실측설계 평가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1. 기본조사	○ 문화재의 역사 및 문헌을 통한 고증조사 여부 ○ 현장측량의 적정 여부 ○ 현황조사의 적정 여부 ○ 보수범위의 적정 여부 ○ 부재의 교체, 대체, 보강의 적정 여부 ○ 실측설계로 인한 민원발생 정도	20
2. 실측조사	○ 적용 척도 및 축척의 적정 여부 ○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 여부 ○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 여부 ○ 대상물의 각 부재 실측의 적정 여부 ○ 부재 가공기법, 이음 및 맞춤 등의 시공기법 등 조사의 적정 여부 ○ 평면·입면·단면·천정·지붕 실측의 적정 여부	25
3. 내역산출	○ 수량 산출의 적정 여부 ○ 일위대가(一位代價)의 적정 여부 ○ 내역 산출의 적정 여부 ○ 공사비 산출(견적) 내용의 적정 여부	20
4. 도서작성	○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 여부 ○ 주요 부분 상세도 작성의 적정 여부 ○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의 적정 여부 ○ 책임기술자 등 설계 관련자의 서명·날인 여부 ○ 설계자문 결과의 적용 여부	25
5. 그 밖의 항목	○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 ○ 문화재의 원형보존 여부 ○ 경관보존설계의 반영 여부	10

2.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이전에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실측설계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 비고

1. 실측설계의 평가 시 평가등급은 우수(점수로는 배점×1), 양호(점수로는 배점×0.9), 보통(점수로는 배점×0.8), 불량(점수로는 배점×0.6)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발주자는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위 세부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실측설계 중 정밀실측설계의 경우에는 내역산출에 대한 평가 배점 10점을 실측조사와 도서작성에 각각 5점씩 배분하여 평가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응 시 원 서

(앞쪽)

"※"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년도 []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응시요건에
따른 응시자격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① 수험번호	※										사 진 (3.5cm × 4.5cm)
② 종 목	③ 종목번호										
④ 성 명	⑤ 주민등록 번 호										
⑥ 전화번호	⑦ 주 소										
⑧ 최종학력	과										
⑨ 시 험 면 제 신 청 (해당자만 기입)											
⑩ 필기시험 면 제	구 분	[] 전 과 목 [] 일부 과목									
⑪ 국가기술 자격취득	사 유										
종 목 명											

.....(절 취 선).....

[]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년도 수 험 표	
⑫ 수험번호	※	⑬ 종목	⑭ 종목번호
⑮ 필기시험 면제과목	[] 전 과 목 [] 일부 과목		
⑯ 성 명			⑰ 생년월일
⑱ 시험 일시 및 장소			

※ 주의사항

- 응시자격이 제한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종목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8일 이내(토·일요일 제외)에 소정의 응시자격 증명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 실기시험 수험자는 시험 응시 전에 반드시 종목별 「수험자 지침공고목록」을 확인하여 시험 시 지참해야 합니다.
- 자격증 발급 안내: 준비물(신분증, 증명사진 2장, 발급 수수료), 발급 장소(문화재청)
- 인터넷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및 인터넷 자격증 발급은 www.q-net.or.kr, 각종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직 인

210mm×297mm[백상지(80g/㎡)]

응시원서 작성방법

- 이 응시원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구분 없이 사용하며, 응시자격을 구분하여 "V"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다음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진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3.5cm×4.5cm 규격의 상반신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2. 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적기 바랍니다.
 3. 제출일: 응시원서 원본과 수험표에 제출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4. 종목 ② ⑬: 응시하려는 해당 기술(기능) 분야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예: 보수)
 5. 종목번호 ③ ⑭: 응시하려는 종목의 종목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6. 성명 ④ ⑯: 한글로 적되 원본의 한자란은 한자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주민등록번호 ⑤ ⑰: 주민등록번호를 칸에 맞추어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8. 전화번호 ⑥: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9. 주소 ⑦: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작성하되, 통·반(아파트인 경우 동·호수)까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0. 최종학력 ⑧: 해당하는 최종 출신학교, 재학, 휴학, 졸업, 수료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V"표시를 하고 전공학과 명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11. 면제신청 ⑨ 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필기시험 면제 해당자로서 면제를 원하는 사람만 신청해야 합니다.(단, 면제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가. 전 과목 ⑩: ()년도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인 경우
- 나. 일부 과목 ⑩: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경우

.....(절 취 선).....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접수된 수험원서,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수수료는 기간, 사유 등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드립니다)
3. 수험자는 수험(필기시험, 실기시험) 시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해야 합니다.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작성된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하여 확인하고,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5.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볼펜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필답형 실기시험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지참해야 합니다.
6. 수험자는 시험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를 제외한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 동안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해당 종목의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수험자의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9.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기시험 실비금액은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장소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게시·공고되니 납부기간 내에 필히 납부해야 합니다.(합격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10. 응시원서 접수처 및 시험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제출인 (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증명사항	재직기간		소속 및 직위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적을 것)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위 작성한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직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주의사항

이 증명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3년간 같은 자격종목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공문서·사문서의 위조·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경력증명서 작성방법

- ① 성명: 한글로 작성하되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②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 ③ 전화번호: 자택 및 회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④ 주소: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작성하되 통·반까지 쓰시기 바랍니다.
- ⑤ 재직기간: 기간을 연·월 단위로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⑥ 소속 및 직위: 소속은 해당 기관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⑦ 담당 업무 내용: 담당 업무는 해당 기술 분야(보수, 실측설계, 조정, 보존과학, 식물보호 분야)의 실무경력을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⑧ 각종 증명 발급은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 및 발급해야 하며, 문화재수리 업무 분야에 종사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업무에 종사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일반전화 : 휴대전화 :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근무처	
발급(재발급) 신 청 사 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항 및 제5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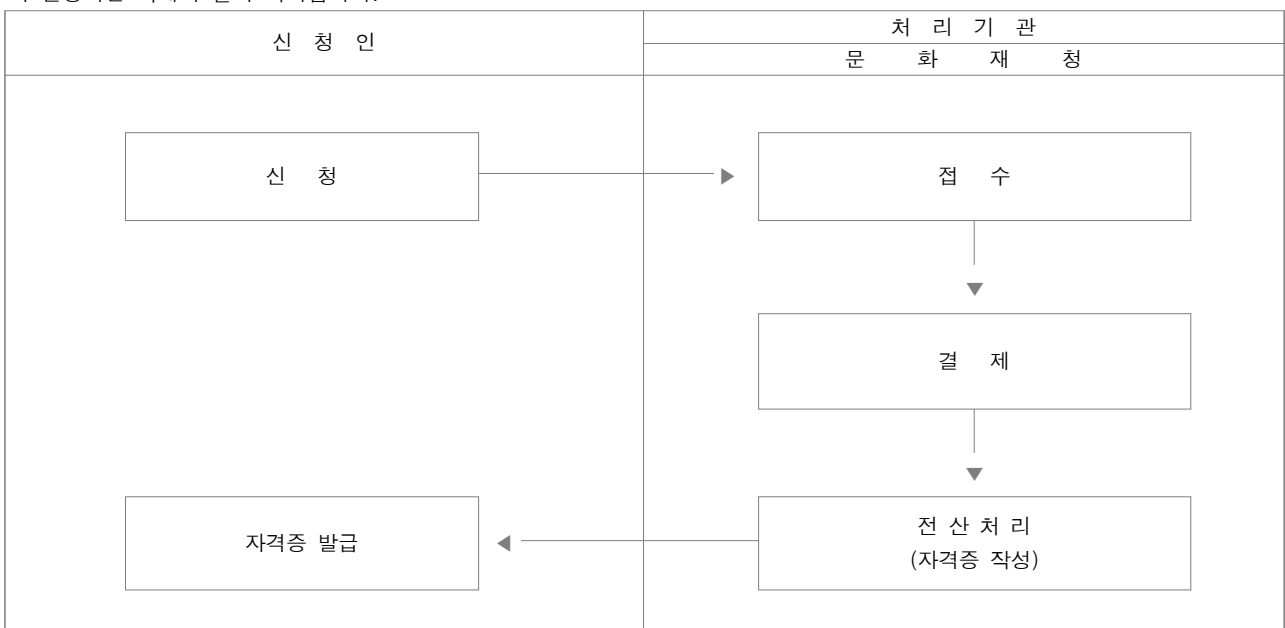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주민등록증 2.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사진) 2장(재발급인 경우에는 1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표지 앞쪽)

(표지 뒤쪽)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문 화 재 청

76mm×115mm[고급비닐(200g/㎡)]

76mm×115mm[고급비닐(200g/㎡)]

(6쪽 중 제1쪽)

(6쪽 중 제2쪽)

주의사항

1.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취득자는 주소와 소속된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3.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취득자가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4.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취득자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하면 같은 법 제47조(제48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이 정지됩니다.
5.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76mm×115mm[백상지(150g/㎡)]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자격번호:

성 명:

자격종목:

생년월일:

주 소:

합격 연월일: 년 월 일

발급 연월일: 년 월 일

사 진
(3.5cm×4.5cm)

문화재청장 직인

76mm×115mm[백상지(150g/㎡)]

행정처분사항

(6쪽 중 제3쪽)

처분일	처분 근거	처분 기간	처분 내용	처분 사유	기록자

변경사항

(6쪽 중 제4쪽)

구 분	변경내용	기록자	비 고

현장경력

(6쪽 중 제5쪽)

문화재 수리명	시행청	도급자	공사 기간	기록자	비고

※ 확인 : 시행청

전문교육 이수 현황

(6쪽 중 제6쪽)

교육 종류	교육 시간	확인 기관	기록자	비고

※ 확인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명부

(앞쪽)

인 적 사 항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진 3.5cm×4.5cm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 취득일			
	전화번호	일반전화: 휴대전화:		
	주 소			
학 력	학력 구분	☐ 대학원 ☐ 대학교 ☐ 전문대학 ☐ 고등학교 ☐ 훈련원 ☐ 중학교 이하		
	최종 학교명	학교 과 년 ((☐ 졸업, ☐ 졸업예정, ☐ 수료, ☐ 재학, ☐ 중퇴)		
근 무 처	상 호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보 수 교 육				
기 간	종 류	기 관	수 료 증 번 호	
변 경 사 항				
변경 연월일	변 경 구 분	변 경 내 용		기 록 자(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120g/m²) 또는 백상지(80g/m²)]

변 경 사 항					
변경 연월일	변경 구분		변 경 내 용		기 록 자(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사항(자격취소·자격정지 등)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기 록 자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대장

일련 번호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발급일	비 고

210mm×297mm[백상지(150g/㎡)]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대장

일련 번호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발급일	비 고

210mm×297mm [백상지(150g/m²)]

제 호

교 육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보유자종류 :

교육기간 : . . . ~ . . . (시간)

교육과정 : 무형문화재보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위 사람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위의 교육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전 통 문 화 대 학 교 의 장

직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문화재청장(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 경력등 확인서. 다만,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2. 법 제10조제1항 및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자격증 사본 3. 졸업증명서 4. 사진 1장 5.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6. 문화재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경력신고서 작성방법

- ①, ②, ③란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적습니다.
- ④ 학력은 최종학력(대학이상 모두)을 적습니다.
- ⑤ 근무처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업무에 근무하고, 경력확인서를 첨부하는 업체를 적습니다.
- ⑥ 담당직무는 "현장업무", "일반사무"중에 선택하여 적습니다.
- ⑦ 교육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적습니다.
- ⑧ 상훈·제재는 문화재수리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또는 제제사항을 적습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근무회사별)

인적사항	①성명	(서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보유자격항목		⑥자격번호	
소속회사	⑦회사명		⑧사업자등록번호	
	⑨대표자		⑩영업소재지	
	⑪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⑫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번호	
	⑬근무기간		⑭회사전화	
사무경력1	⑮업무기간		⑯코드번호	
사무경력2	⑮업무기간		⑯코드번호	
현장경력1	⑰참여사업명		⑱발주자	
	⑲사업비(천원)		⑳사업종류코드번호	
	㉑사업기간		㉒참여기간	
	㉓담당업무		㉔직위 또는 직급	
	㉕사업개요	※7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현장경력2	⑰참여사업명		⑱발주자	
	⑲사업비(천원)		⑳사업종류코드번호	
	㉑사업기간		㉒참여기간	
	㉓담당업무		㉔직위 또는 직급	
	㉕사업개요	※7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비고(이 남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⑦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상호변경 또는 흡수 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⑬란의 근무기간은 소속회사의 입사일 부터 퇴사일 까지를 적으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
- ⑮란의 업무기간은 문화재수리관련 일반사무 등을 한 기간을 적으면 됩니다.(현장경력 참여기간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⑯란의 코드번호는 "300"을 적으면 됩니다.
- 일반사무경력이 3개 이상인 경우 일반사무경력2 다음에 이어서 ⑮, ⑯를 적습니다.
- ⑰란의 참여사업명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실제 참여한 문화재수리등의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 ⑱란의 발주자는 해당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기관명·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 ⑲란의 사업비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참여한 문화재수리등의 완료금액(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계약금액)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하도급의 경우는 직접 시공한 하도급 문화재수리분만 적습니다.)
- ⑳란의 사업종류 코드번호는 다음 표에서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사업종류 코드번호	
			지정·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
건조물	목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1	211
	조적조(석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2	2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3	213
	석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4	214
	단청	· 단청	115	215
	그 외 건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6	216
성곽·유적	유적지	· 분묘·발굴지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1	221
	성곽	· 성곽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2	222
보존처리	목부재	· 목부재 보존처리	131	231
	석부재	· 석부재 보존처리	132	232
	기타	· 벽화 등 보존처리	133	233
조경	조경	· 조경정비	140	240
식물보호	식물보호	· 식물보호	150	2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기단, 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 면단위로 지정된 문화재구역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펜스·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지정·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주변정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㉑란의 사업기간은 착수일과 완료일의 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사업기간을 적습니다.)
- ㉒란의 참여기간은 해당 문화재수리등에 실제 참여한 기간(공사중지기간 제외)을 적으며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수일과 완료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으면 됩니다.
 - 문화재수리등에 상주 등 현장에 상주해서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다른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 해당 문화재수리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중"으로 표기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중"으로 신고한 경력이 종료되었으면 그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야 합니다.
- ㉓란의 담당업무는 문화재수리업무, 실측설계업무, 문화재감리업무, 감독업무 중에 선택하여 적습니다.
- ㉔란의 사업개요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참여한 문화재수리 등의 사업규모를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하도급 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도급 문화재수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현장경력이 3개 이상인 경우 현장경력2 다음에 이어서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를 적습니다.
- 경력확인서 발급시 일련번호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경력증 발급번호			전화번호			
	주 소						
변 경 사 항	① 학 력	재 학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과		학 위
		~					
		~					
		~					
	② 자 격	자 격 명 (종 류)	자 격 번 호		자 격 취 득 일		발 급 기 관
	③ 교 육	교 육 기 간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관
		~					
		~					
		~					
	④ 상 훈 · 제 재	발 생 연 월 일	종 류		상 훈 · 제 재 기 관		근 거
	⑤ 추 가 경 력	회 사 명	근 무 기 간		업 종		담 당 직 무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경력등 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문화재청장(수탁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변경된 신고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경력변경신고서 작성방법

1. ①란 학력은 경력신고 이후의 변경학력을 적습니다.
2. ②란 자격은 경력신고 이후에 취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적습니다.
3. ③란 교육은 경력신고 이후에 이수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적습니다.
4. ④란 상훈·제재는 경력신고 이후에 문화재수리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또는 제제사항을 적습니다.
5. ⑤란 추가경력은 경력신고 이후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근무하고 경력확인서를 첨부하는 업체를 적습니다.

[] 신규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 [] 갱신 신청서
[] 재발급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발급사유	(※갱신 또는 재발급인 경우에만 작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3항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 ([] 신규, [] 갱신,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경력증(경력 등의 갱신이나 경력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등의 재발급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	--	--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증

문화재청장(수탁기관)

※ 유의사항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증의 갱신사유 또는 재발급 사유(훼손, 분실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제3항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경력증명: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진

(3.5cm×4.5cm)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4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수탁기관의 장)

직인

▲ 자격사항

자 격 명	종류	자격번호	취득 연월일

▲ 학력사항

학교명	학과(전공)	졸업 연월일

▲ 경력사항

[illegible]

▲ 교육사항

기 간	과정명	교육기관명	비 고

▲ 상훈·제재사항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기관	근거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5항에 따라 경력등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문화재청장(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앞쪽)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경력증명	발급일		
	주 소			
자격사항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발급기관
학력사항	졸업일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교육사항	교육기간	교육과정		교육기관
상훈사항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제재사항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근거

210mm×297mm[백상지(80g/㎡)]

경력사항

기간	근무처명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참여사업명	사업비	코드번호	발주자

- 근무경력 수행기간(A=B+C) : 일
- 사무경력 수행기간(B) : 일
- 현장경력 수행기간(C) : 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6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수탁기관의 장)

직인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대장

[illegible]210mm×297mm[백상지(120g/m²) 또는 백상지(80g/m²)]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화재수리기술자 경력증 발급대상, 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증 발급대상으로 구분 작성합니다.
- 자격명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로 표기하고 괄호안의 종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를 표기합니다.
- 발급구분은 신규, 갱신, 재발급으로 표기합니다.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신청 업종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현황	(번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 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 담당 공무원의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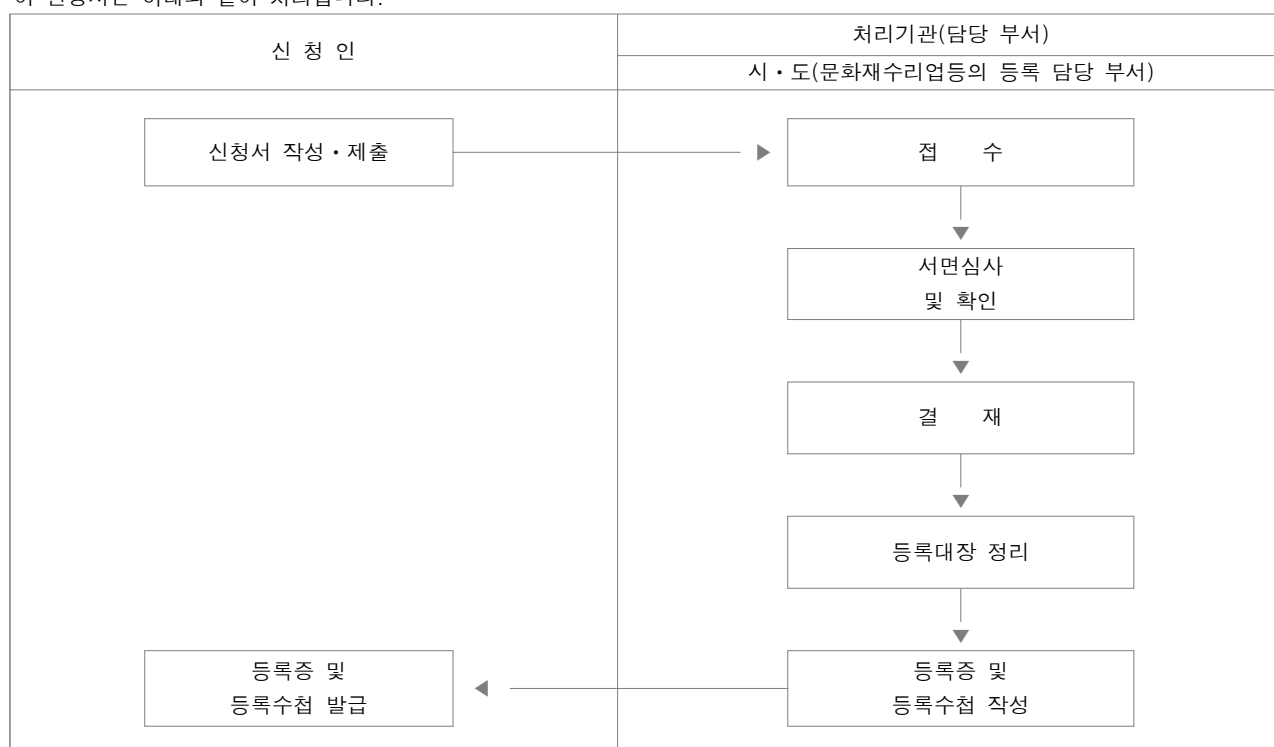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2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일련 번호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 명	주 소	입사일	등록일	전화 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일련 번호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 명	주 소	입사일	등록일	전화 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150g/m²))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문화재수리업등 종류 :

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영 업 소 소재지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등 록 일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150g/㎡)]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문화재수리업 등의 종류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 지			
법인등록 번호 (생년월일)		등록일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 제2쪽부터 제4쪽까지 참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 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작 인

105mm×148mm[백상지(150g/㎡)]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 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명	신고 접수일	기록자	비고

※ 확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 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명	신고 접수일	기록자	비고

※ 확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록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기록일·기록자

※ 확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문화재수리능력

연도	문화재수리의 종류	금액(천원)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앞쪽)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				
문화재수리업 등의 종류		등록번호		등록일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 등록번호			전화번호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구 분	등록(신고) 업종 및 번호		등록일 (신고일)
	건설업 등록			
	건축사 업무신고			
	기 타			
그 밖 의 사 항				
등 록 변 경 사 항				
변경일	변경 구분	변 경 내 용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150g/㎡)]

등 록 변 경 사 항							
변경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기록일 및 기록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성 명	자격종목	자격 번호	입사 관련		퇴사 관련		비고
			입사일	신고일	퇴사일	신고일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성 명	자격종목	자격 번호	입사 관련		퇴사 관련		비고
			입사일	신고일	퇴사일	신고일	

시설(사무실) 현황			
시설명	면 적	주소	소유형태

자본금 현황									
자산 총계	유동 자산	고정 자산	부채 총계	유동 부채	고정 부채	자본 총계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행정처분사항(등록취소·영업정지·과태료 등)			
처분기관(처분일)	처분내용	처분사유	기록자(서명 또는 인)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

일련 번호	등록일	문화재수리 업등의 종류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수령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상호·대표자·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 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및 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변 경 내 용			
변경 구분	변경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수첩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 담당 공무원의 제1호·제3호가목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제3호가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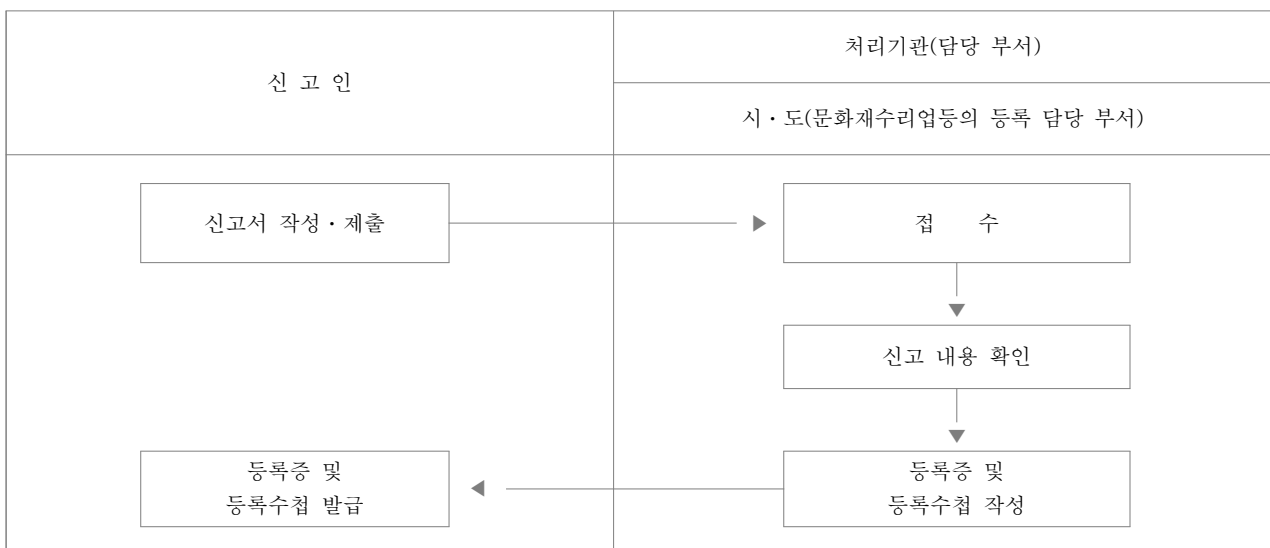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하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폐업사유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폐업 업종 외 보유 업종)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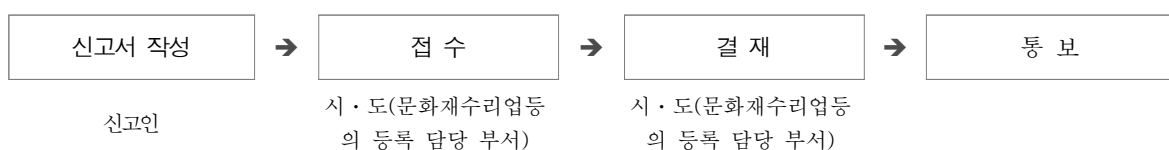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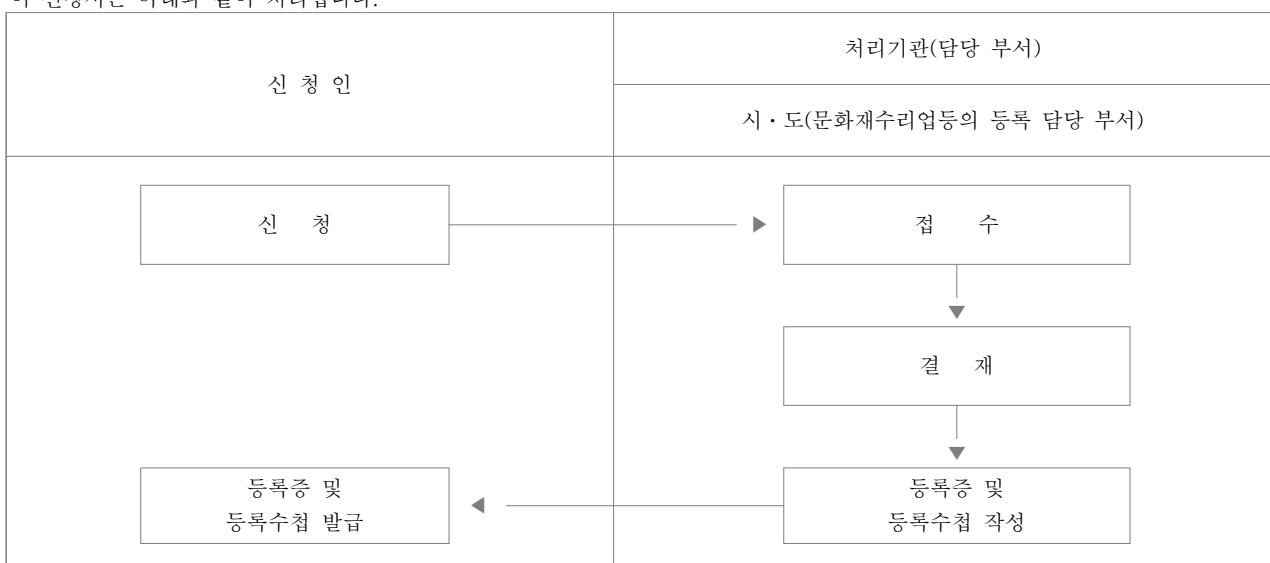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본사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1) 일련 번호	(2) 문화재 수리명	(3) 세부 공종	(4) 문화재 수리 지역	(5) 발주자명	(7) 도급 종류	(8) 발주 자	(9) 입찰 형태	(10) 계약 연월	(11) 착수 (예정) 연월	(12) 완료 (예정) 연월	(13) 당년도계약액 또는 이 월계약액 (공동도급은 지분기재)	(14) 당년도기성액	(15) 당년도발주자 공급자재액																
				(6) 하도급 문화재 수리는 원도급자 명 기재							총계약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관 급자재액								
				상기항목[(7) 항목제외]들은 뒤쪽을 참조하여 코드로 기재								연	월	연	월	연	월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천	백 억	십 억	억	천 만
소 계																													

- 183 -

※ 등록업종별 부호코드		※ 세부공종별(3) 부호코드				
(종 합) (전 문) 10:보수단청 11:단청 12:목공사 13:석공사 14:번와공사 20:조경 30:보존과학 40:식물보호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코드번호	
					지정·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
		건조물	목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1	211
			조적조(석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2	2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3	213
			석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4	214
			단청	• 단청	115	215
			그 외 건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6	216
		성곽·유적	유적지	• 분묘·발굴지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1	221
			성곽	• 성곽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2	222
		보존처리	목부재	• 목부재 보존처리	131	231
			석부재	• 석부재 보존처리	132	232
			기타	• 벽화 등 보존처리	133	233
		조경	조경	• 조경정비	140	240
		식물보호	식물보호	• 식물보호	150	2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기단, 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 면단위로 지정된 문화재구역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펜스·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지정·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주변정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본사소재지 및 문화 재수리지역(4) 부호코드	※ 도급종류(7) 부호코드	※ 발주자별(8) 부호코드				※ 입찰형태별(9) 부호코드	
21:서울 22:부산 23:대구 24:인천 25:광주 26:대전 27:울산 28:세종 31:경기 32:강원 33:충북 34:충남 35:전북 36:전남 37:경북 38:경남 39:제주	1. 도급 2. 하도급	(자치단체) (정부기관)	(민간부분)	(기타)		5:일반경쟁 6:지명경쟁 7:제한경쟁 8:수의계약 9:기타	
		21:서울 41:기획재정부 81:종교단체 91:공공단체					
		22:부산 42:교육부 82:서원관리단체 92:국영기업체					
		23:대구 43:미래창조과학부 83:향교관리단체 93:주한외국기관					
		24:인천 44:국방부 84:가옥관계자					
		25:광주 45:행정자치부 85:기타					
		26:대전 46:문화체육관광부					
		27:울산 47:농림축산식품부					
		28:세종 48:산업통상자원부					
		31:경기 49:보건복지부					
		32:강원 50:환경부					
		33:충북 51:고용노동부					
		34:충남 52:국토교통부					
		35:전북 53:해양수산부					
		36:전남					
		37:경북 ※ 청은 소속 부처					
		38:경남 명으로 기재					
		39:제주					

()년도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일련번호:

1. 문화재수리업자	상호	업종(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2. 문화재수리 내역

문화재수리 발주 구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발주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발주하는 경우 ☐ 상기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경우(하도급받은 경우 포함) ☐ 자기 문화재수리인 경우		
문화재수리명		현장소재지	
사업개요			
세부공종내용	※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세부공종별상의 중분류와 보수유형 등을 기재	세부공종 부호코드	※ 별지 제15호의2서식 기재방법 참조
발 주 자		원도급자	등록번호
계 약 일		착 수 일	완료(예정)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지명경쟁 ☐ 제한경쟁 ☐ 수의계약 ☐ 기타		
도급종류	☐ 원도급 ☐ 하도급		

3. 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천원)

총 도급계약액		지난 연도까지의 기성액 누계		지난 연도 이월액	
해당 연도 기성액		하도급금액 (원도급자가 기재)		미기성액	
관급 자재액		다른 종류 포함 기성액		해당 연도 추가 또는 변경 계약액	

4. 그 밖의 사항(규모, 공동도급내역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발 주 자 (수급인)	상 호:	
	대 표 자:	(인)
	소 재 지:	
	담 당 자: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문화재수리기술자등 보유현황표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자 격 내 용				비고
				자격명	종류	자격 번호	취득 연월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보유현황이 위와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업소재지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을 증명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작 인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양수인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5.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문화재수리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제1호나목 및 라목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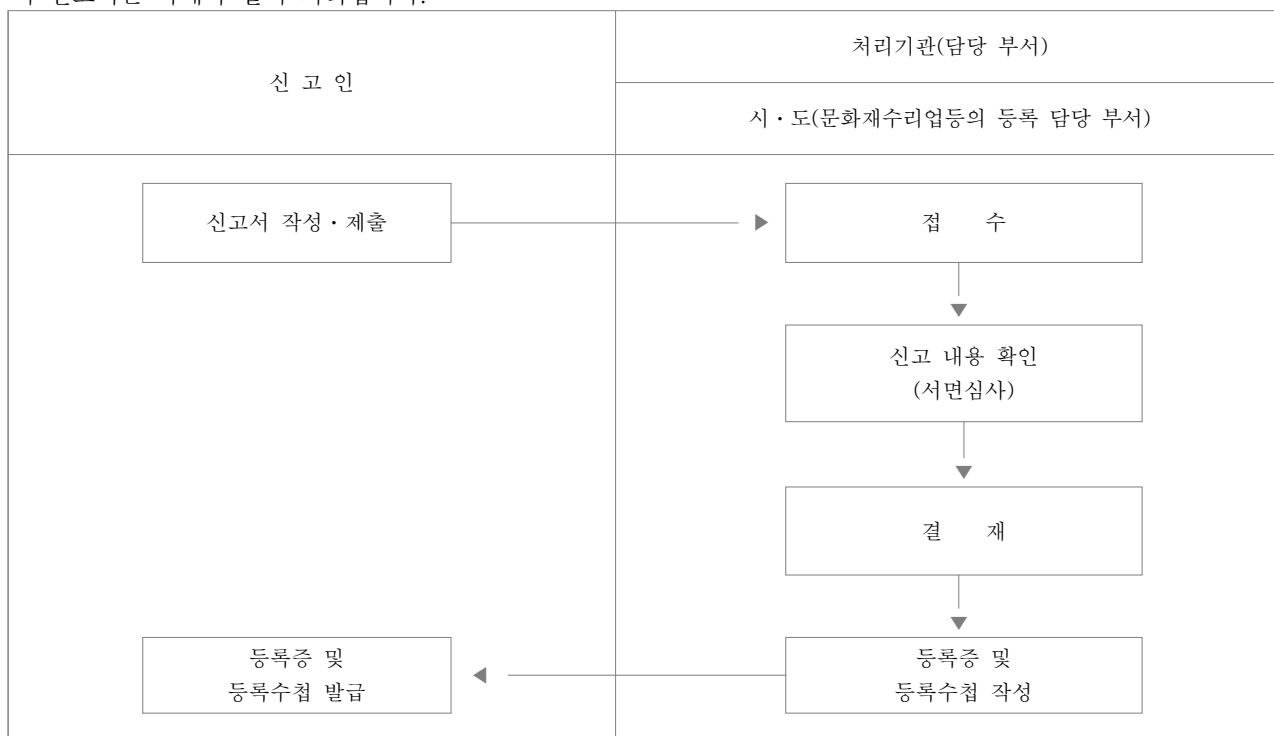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1호나목 및 라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법인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제1호나목 및 라목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1호나목 및 라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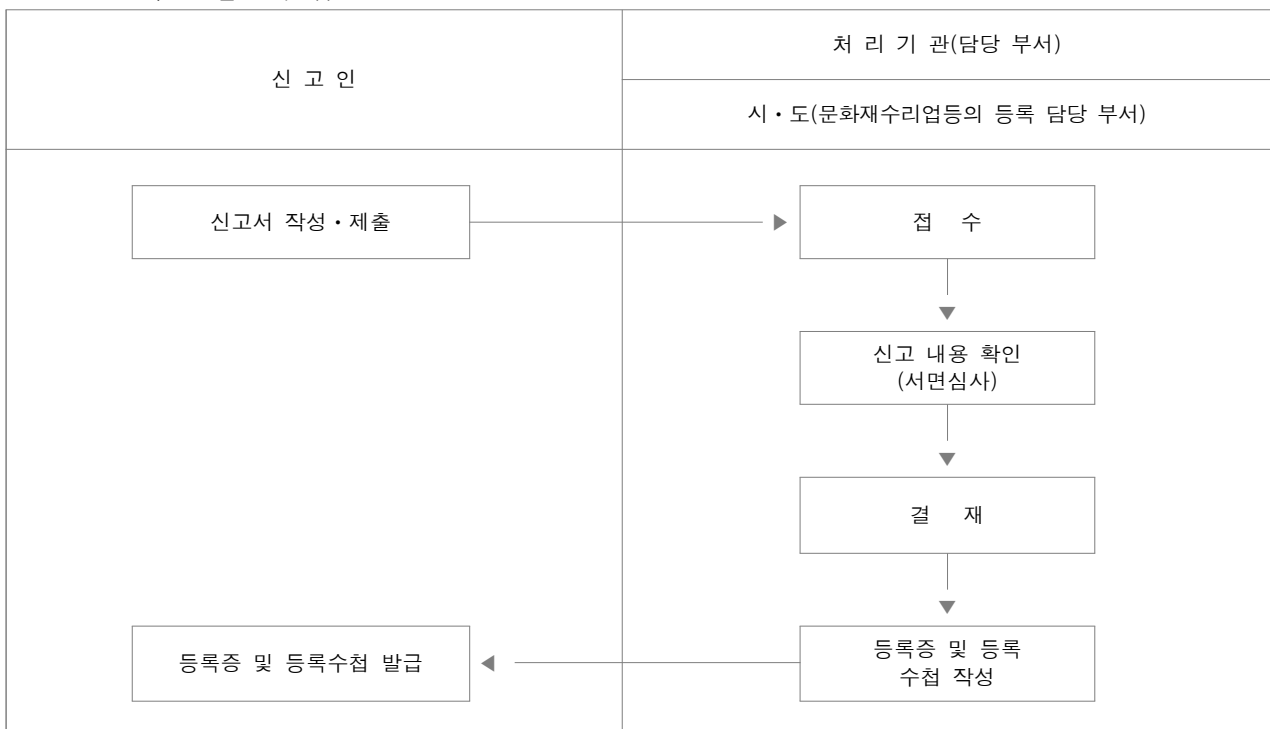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피상속인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제1호나목 및 라목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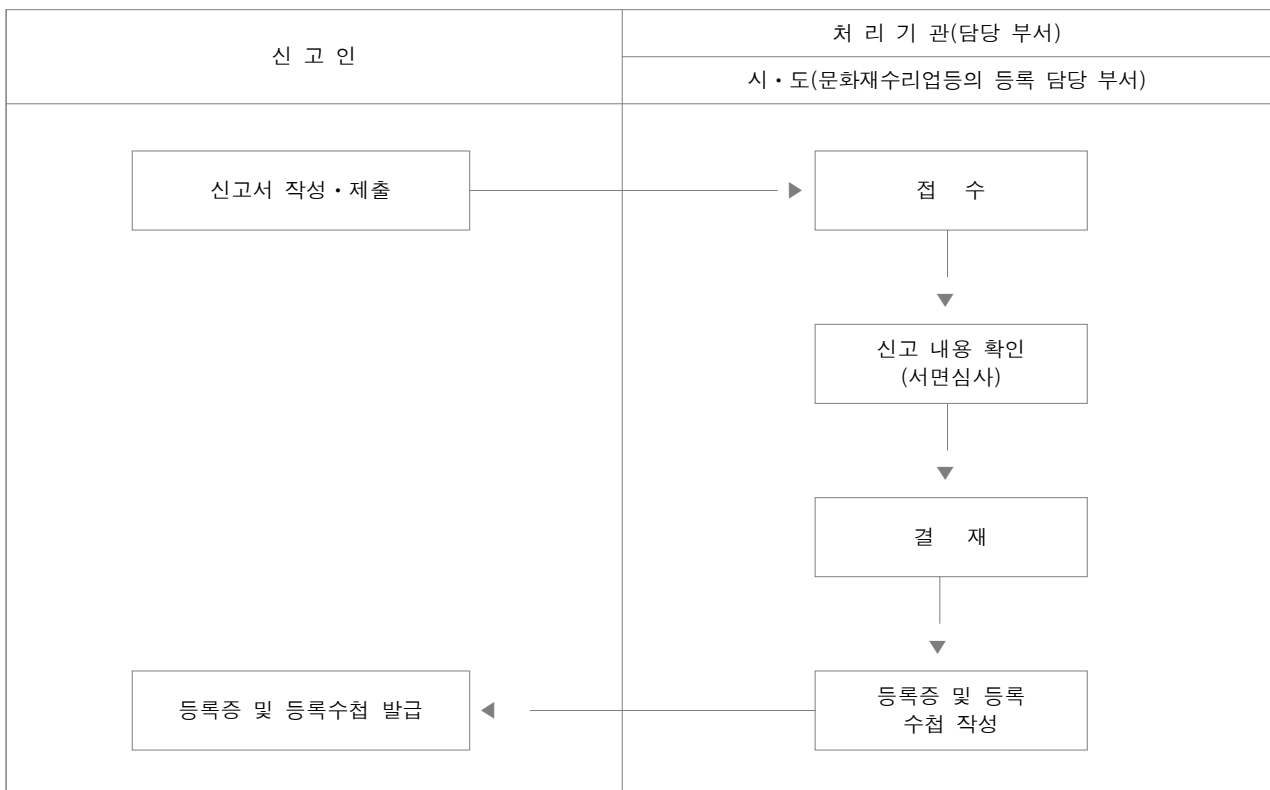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1호나목 및 라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1. 공사 개요									
공 사 명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발주자		상 호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문화재수리 내용									
2. 도급계약 내용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급금액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계약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하자보수 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이행, 지체, 위약, 기타 손해배상									
공사대금 지급 시기 및 조건		기성금		지급 횟수				준공금	
				지급 조건					
발주자의 지급재료		품명		수량		품명		수량	
연대보증인		상호		대표자				주소	
		상호		대표자				주소	
3.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				계약 내용			변경 내용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등록 업종	계약금액	계약일	공사기간	1차	2차	

210mm×297mm[백상지(150g/㎡)]

4. 문화재수리 참여자 현황

현 장 대리인	구분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성 명			
	자격종목 및 번호			
	배치기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성명	자격종목 및 번호	배치기간	담당 업무 내용	

5. 문화재수리의 진척 및 문화재수리 대금의 수령 현황

구분	업 체	회 차	검사일	수령일	수령금액	수령금액 누 계	잔 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율)							
기성금 (기성율)							
준공금							

6. 사후관리

하자발생 연월일	하자보수 완료 연월일
그 밖의 사항	

실측설계 도급 대장

1. 설 계 개 요						
설 계 명						
문화재명				소재지		
발주자	상 호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설계 내용						
2. 도급계약 내용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급금액	당 초		1차 변경		2차 변경	
계약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3. 실측설계 참여자 현황						
성 명	자격종목 및 번호		참여기간	담당 업무 내용		
4. 그 밖의 사항						
○ 해당 문화재의 실측설계 시 특이사항을 기록 (원형 고증, 주요 전통기법조사 내용 등)						

감리 도급 대장

1. 감리 개요						
감리명						
문화재명				소재지		
발주자	상호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감리내용						
2. 도급계약 내용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급금액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계약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3. 문화재수리 내용						
상호(명칭)		업종 및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도급금액		공사기간		변경금액 (1차)	변경금액 (2차)	
4. 감리 참여자 현황						
성명	자격종목 및 번호		참여기간	담당 업무 내용		
5. 시정 및 통보사항						
일련번호	시정일	시정 및 통보사항				

210mm×297mm [백상지(150g/m²)]

하도급통보서

문 화 재 수 리 명							
수급인	상 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 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도급 내용	공사명			도급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하도급	공 종			하도급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하도급 사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의 하도급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1부 2.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규모·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3. 예정공정표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장 배치 확인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		자격번호	
	주소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연번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계약구분	직책	발주자명	확 인 연월일	확 인 (발주자)
1							
2							
3							
4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9조에 따라 현장 배치 확인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발주자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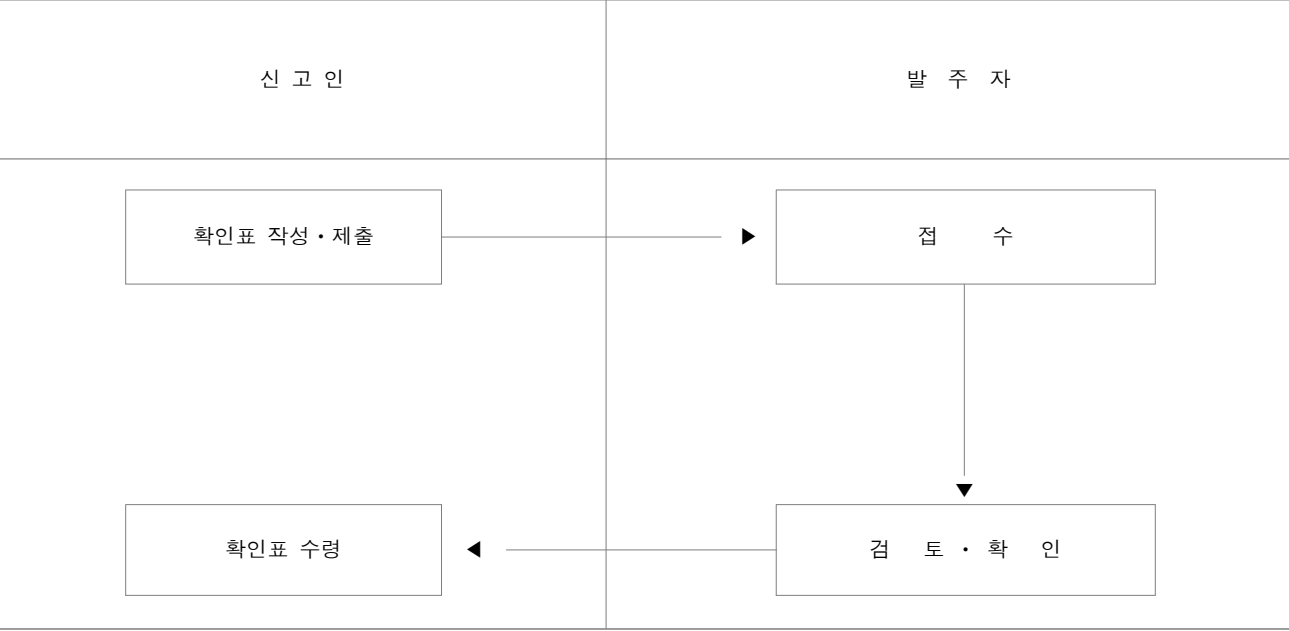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3. 계약구분은 수의계약규모, 수의계약규모초과를 적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처 리 절 차

이 확인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감리일지									
공 사 명			연 월 일 (요일)			날씨		누계 공정	
주 요 작 업 상 황	공 종	단 위	설 계 량	당 일		누 계 작 업 량	공 정 (%)	특 이 사 항	
				작 업 위 치	작 업 량				
문 화 재 감 리 원 업 무 수 행 내 용	성 명	서 명	주 요 업 무 수 행 내 용					지 시 사 항	
관 련 문 서	업 무 분 류	문 서 분 류	공 종 구 분	위 치		제 목 (내 용 요 약)			
특 이 사 항									

작성요령

1. 문화재감리원은 본인의 업무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공사 추진 내용, 검측 결과, 현장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기록·서명하여 현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2. 주요 작업 상황은 공사 추진 계획에 따라 당일 작업 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공종에 대한 업무 수행 내용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m²) 또는 백상지(80g/m²)]

제 호

교 육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교육과정 :

교육종류 :

교육기간 : 20 . . . ~ 20 . . . (시간)

위 사람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의 보수교육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

직인

발주자 :

평가자 :

(서명 또는 인)

(앞쪽)

문화재수리 평가표							
문화재수리명		문화재수리업자	대표자: , 면허번호:				
수리 개요		소재지					
		수리금액		공사기간			
		현공정		평가연월일			
구분	세부 평가기준	배점	평가등급				점수
			우수 (×1)	양호 (×0.9)	보통 (×0.8)	불량 (×0.6)	
1. 현황조사	○ 문화재수리 전 사전조사 및 문화재 특성조사 - 사전 설계도서 검토 여부 - 문화재 현황, 전통기법 및 양식, 전통재료 등 - 문화재수리로 영향을 받는 주변 환경 조사 등	10					
2. 시공관리	○ 문화재수리 계획의 수립·실시 ○ 문화재수리 상태 -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 - 주요 공종의 시공 및 마감 상태의 적정 여부 - 해체·조립의 적정성 여부 -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활용	30					
3. 품질관리	○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품질관리 상태 - 각종 시험의 실시 여부 - 적정한 자재 사용 여부 및 관리상태 - 잔여 부재의 재사용 여부 - 전통도구의 사용 및 전통기법 이행 여부	15					
4. 공정관리	○ 공정관리 - 공정표의 작성 및 관리 여부 - 문화재수리 기간 중 전체 계획 대비 실적 - 문화재수리 현장의 주변 여건 등 공정의 난이도	15					
5. 안전 및 환경관리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안전관리 교육 실시, 위험·안전표지판의 설치 -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관리 실태 - 주변 환경의 훼손 여부	10					
6. 현장관리	○ 현장관리 - 발주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지시사항 이행 실태 - 현장관리를 위한 인원 배치의 적정성 여부 - 자재 및 현장의 정리·정돈 상태 - 현장관리의 소홀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	10					
7. 보고서작성	○ 보고서 작성 - 현황 및 원형조사, 부재조사 등 조사기록의 충실 여부 - 세부 공사 내용 등의 기록 충실 여부 - 각종 자료정리 상태	10					
합 계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처분사실·날짜 및 처분기관	감점 및 가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이전에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사업건수마다 가점한다.	+ 1점	3년		
평 점				

비 고

1. 발주기관의 장은 문화재수리의 특성에 따라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평가평점은 평가점수의 평균에 문화재수리업자의 성실성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합니다.

발주자 :

(단위: 천원)

문화재수리 평가총괄표									
순위	문화재 수리명 (문화재명)	공사 개요	수리 구분	문화재 수리금액	수리 기간	회사명	대 표 자	평점	비고

비 고

1. 순위는 문화재수리의 평가 결과 평점이 높은 순서에 따릅니다.
2. 문화재수리명을 적은 후 () 안에 문화재명을 작성합니다.
3. 수리 구분은 보수·조경·보존과학 등으로 작성합니다.

발주자:

평가자:

(서명 또는 인)

(앞쪽)

실측설계 평가표							
실측설계명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대표자)					
실측설계 개요		실측설계 내용					
착 공		실측설계금액					
준 공		평가 연월일					
구 분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등급				점수
			우수 (×1)	양호 (×0.9)	보통 (×0.8)	불량 (×0.6)	
1. 기본조사	○ 문화재의 역사 및 문헌을 통한 고증조사 여부 ○ 현장측량의 적정 여부 ○ 현황조사의 적정 여부 ○ 보수범위의 적정 여부 ○ 부재의 교체, 대체, 보강의 적정 여부 ○ 설계로 인한 민원발생 정도	20					
2. 실측조사	○ 적용 척도 및 축척의 적정 여부 ○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 여부 ○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 여부 ○ 대상물의 각 부재 실측의 적정 여부 ○ 부재 가공기법, 이음 및 맞춤 등의 시공기법 등 조사의 적정 여부 ○ 평면·입면·단면·천정·지붕 실측의 적정 여부	25					
3. 내역산출	○ 수량 산출의 적정 여부 ○ 일위대가(一位代價)의 적정 여부 ○ 내역 산출의 적정 여부 ○ 공사비 산출(견적) 내용의 적정 여부	20					
4. 도서작성	○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 여부 ○ 주요 부분 상세도 작성의 적정 여부 ○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의 적정 여부 ○ 책임기술자 등 설계관련자의 서명·날인 여부 ○ 설계자문 결과의 적용 여부	25					
5. 기 타	○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 ○ 문화재의 원형보존 여부 ○ 경관보존설계의 반영 여부	10					
합 계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처분사실·날짜 및 처분기관	감점 및 가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이전에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사업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평 점				

비 고

1. 발주기관의 장은 실측설계의 특성에 따라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평가평점은 평가점수의 평균에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성실성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합니다.

발주자 :

(단위:천원)

실측설계 평가총괄표								
순위	실측설계명	실측설계 개요	실측설계 금액	실측설계 기간	실측설계업명	대표자	평점	비고

비 고

순위는 실측설계의 평가 결과 평점이 높은 순서에 따릅니다.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

1. 지정 현황							
우수 문화재 수리업자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2. 문화재수리업자 순위표							
순위	문화재 수리업자명	대 표 자	문화재수리명	문화재수리 금액	문화재수리 기간	평점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여부
3.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별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사 실 확인기관		사 실 여 부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 트 안에 들 것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받 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 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10mm×297mm[백상지(120g/m²) 또는 백상지(80g/m²)]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

1. 지정 현황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2.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순위표							
순위	문화재실측설계업자명	대표자	실측설계명	실측설계 금액	실측설계 기간	평점	우수 문화재 실측설계업자 지정 여부
3.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별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사 실 확인기관		사 실 여 부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 항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 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측설계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10mm×297mm[(백상지(120g/m²) 또는 백상지(80g/m²)]

